

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중
기탁금 관련규정 개정의견

2001. 9. 3.

중앙선거관리위원회

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候補者登錄을 申請하는 者의 寄託金を 1 千萬원으로 下向 調整하도록 하고,

地域區國會議員選舉에 있어서 寄託金の 返還要件을 候補者가 當 選되거나 사망한 때와 候補者の 得票數가 有效投票總數를 候補者數 로 나눈 數의 2分の 1 이상이거나 有效投票總數의 100分の 5 이상 인 때로 調整하도록 함.